##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왕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380

발의연월일: 2024. 7. 30.

발 의 자:서왕진·김준형·김선민

차규근 • 이해민 • 김재원

조 국・박은정・황운하

신장식 · 강경숙 · 천하람

정춘생 의원(13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입법 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섭 단체에 정책연구위원을 둔다고 규정하여 정책연구위원 배정의 주체를 원내교섭단체로만 한정하고 있음.

정책연구는 교섭단체가 된 정당뿐만 아니라 모든 원내정당이 하는 것임에도, 현행법에 따르면 원내교섭단체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한 비교섭단체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시 정책연구위원의 정책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어 국회 의사결정 및 의정활동의 폭을 넓 히는 데 제약 요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.

이에 원내정당 정책연구위원 규정을 두어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는 권한의 주체를 현행 '교섭단체'에서 '원내정당'으로 확대하고자 함 (안 제34조 및 제65조).

법률 제 호

###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의 제목 중 "교섭단체"를 "원내정당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교섭단체 소속 의원의"를 "원내정당(국회에 1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소속의원의"로, "교섭단체에"를 "원내정당에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교섭단체"를 "원내정당"으로한다.

제65조제5항 중 "교섭단체의"를 "원내정당의"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4조(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)	제34조( <u>원내정당</u> 정책연구위원)
①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입법	① 원내정당(국회에 1명 이상
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<u>교섭</u>	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을 말
<u>단체에</u> 정책연구위원을 둔다.	한다. 이하 같다) 소속의원의
	<u> 원내정당에</u>
	<u>.</u>
② 정책연구위원은 해당 <u>교섭</u>	② <u>원내</u>
<u>단체</u> 대표의원의 제청(提請)에	<u> 정당</u>
따라 의장이 임면한다.	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65조(청문회) ① ~ ④ (생	제65조(청문회) ① ~ ④ (현행과
략)	같음)
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국회	5
사무처, 국회예산정책처 또는	
국회입법조사처 소속 공무원이	
나 <u>교섭단체의</u> 정책연구위원을	<u>원내정당의</u>
지정하거나 전문가를 위촉하여	
청문회에 필요한 사전조사를	
실시하게 할 수 있다.	
⑥ ~ ⑧ (생 략)	⑥ ~ ⑧ (현행과 같음)